

종합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종합감사 -

2022. 5. .



처분요구일람표

1. 〇〇〇〇〇 조경관리공사 (주의) 1
수의계약 부적정

경 상 북 도

주 의 요 구

제 목 〇〇〇〇〇 조경관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
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
내 용

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는 울진군으로부터 〇〇〇〇〇 조성사업 건설업무를 위탁 받고 아래 [표] 와 같이 〇〇〇〇〇 조성사업을 시행한 포항시 남구 대송로 〇〇〇에 소재하는 (주)⊕⊕⊕와 2020. 6. 27.부터 같은 해 12. 31.까지 〇〇〇〇〇 조경 유지 관리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[표] 〇〇〇〇〇 조경관리 계약현황

(단위 : 원)

계약일	계약명	계약업체	계약기간(연장)	계약금액	비고
			합 계		
2020. 6. 24.	〇〇〇〇〇 조경 유지관리공사	(주)⊕⊕⊕	2020. 7. 1. ~ 12. 31.		본계약
			~ 2021. 3. 31.		연 장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「회계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 공사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,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“가”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,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5장 제3절 “3”항목에는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하천 축제·하천호안·도로포장·도로개설·상하수도 접합·조경·토공·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.

따라서 조경관리는 제초 및 시약작업 등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경은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하자 구분곤란을 사유로 수의로 계약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.

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20. 6. 18. #####로부터 ##### 조경유지관리 공사 계약의뢰를 받고 검토하면서 ##### 조경 유지관리는 조경관리를 위한 제초, 시비, 전정 등 용역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경은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7. 9. 25.부터 2020. 6. 26.까지 ##### 조성사업을 시공사인 (주)○○○와 2020. 6. 24. \$\$\$, \$\$\$, \$\$\$원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부적절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해 12. 28. 울진군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\$\$\$, \$\$\$, \$\$\$원 증액하여 총 \$, \$\$\$, \$\$\$천원으로 2021. 3. 31.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.

그 결과 #####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혜시비를 야기하게 되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장은

- ① 앞으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을 준수하여 특혜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입찰 및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, (주의)
- ② ○○○, ×××는 「징계규정」 제4조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